

의안번호	2203341
의 퇴 인	김승원 의원
회 답 일	2024. 10. 15.
추계번호	24D3253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례시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억 4,8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3억 2,000만원(연평균 6,4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6조 및 제7조)	230	-	-	-	-	230	46
특례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8조)	18	18	18	18	18	90	18
추가재정소요	248	18	18	18	18	320	64

주: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 및 특례시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의무규정
2	안 제8조(특례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특례시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례시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함)를 두며,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음(제1항)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	의무규정

		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제2항)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둠(제6항)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7항)	
3	안 제14조(영향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의 행정·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가 도 및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함)를 실시하여야 함(제1항) ·도지사 및 특례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 특례 등이 도 및 인근 지역의 행정·재정 운영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제3항)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4	안 제15조(연구기관의 지정)	·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 특례시 관련 정책 및 지원방안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과 관련된 연구기관·연구소 또는 단체를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1항) ·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연구·개발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그 밖에 연구기관의 지정 요건·절차, 지원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의 조례 또는 해당 특례시의 조례로 정함(제3항)	재량규정
5	안 제17조(특례시에 대한 특별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례시에 대하여 그 관할구역 안의 각종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18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특례시에 이양·위임되는 사무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7	안 제20조(특례부여 및 지원)	·특례시장은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98조 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특례시에 대한 특례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도는 특례를 부여받은 특례시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및 제3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
2	안 제8조(특례시 지원 위원회의 설치 등)	○	-
3	안 제14조(영향평가)	×	영향평가의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의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4	안 제15조(연구기관의 지정)	×	연구기관의 지정 요건·절차, 지원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의 조례 또는 해당 특례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연구기관 지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의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5	안 제17조(특례시에 대한 특별지원)	×	지역개발 등을 위한 국가의 재정 지원의 내용 및 범위를 예측하기가 곤란함
6	안 제18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로 설치될 계정의 규모를 추정하기가 곤란함
7	안 제20조(특례부여 및 지원)	×	특례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국가 및 도의 재정 지원 규모 및 지원 비율 등을 추정 곤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지방자치법」¹⁾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분류²⁾하면서

1) 「지방자치법」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군·구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2. 실질적인 행정수요,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행정·재정 운영 및 지도·감독에 대해서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정안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고, 특례시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함) 및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게 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른 연구·용역 비용과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설치·운영비가 추가재정소요로 발생할 수 있음
- 본 추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를 행정안전부의 유사 연구·용역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 안 제8조의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설치에 따른 비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위원회 27명 중 민간위원 13명, 실무위원회는 25명 중 민간위원 5명으로 가정함
 - 연 4회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참석 및 안전검토수당은 회당 25만원³⁾으로 가정
 - 회의참석 및 안전검토수당은 추계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제정안의 부칙과 법안 심사 및 예산 심의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안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

2) 현행법에 따른 특례시는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고양시, 경상남도 창원시 4곳임(행정안전부 공고 제2024-102호)

3)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만원을 지급하되,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만원을 추가 편성할 수 있으며 여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검토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 1일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함

- 비용추계의 전제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유사 연구·용역⁴⁾의 평균 비용을 참고하여 추계 첫해인 2026년에 2억 3,000만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 제1차 재난안전산업 진흥 계획(2024~2028년)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2023년), 1억 3,700만원
 - 인구감소지역 대응(2022~2026년) 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 연구(2022년), 3억 2,700만원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표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6조 및 제7조)	230	-	-	-	-	23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안 제8조(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설치)

- 안 제8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매년 1,800만원으로 추계됨
- 제정안에 따르면,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도지사, 관계 특례시장으로 함
 - 또한 제정안은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 이에 본 추계에서는 지원위원회를 총 27명(민간위원은 50%인 13명), 실무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참조하여 총 25명(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에게 회의참석 수당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4) 자료: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하며, 분기별로 각각 1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매년 1,800만원(18명×4회×25만원)이 될 것으로 추계됨

[표 3]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설치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특례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8조)	18	18	18	18	18	9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례시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억 4,800만원, 2030년 1,8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3억 2,000만원(연평균 6,4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은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
- 이에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4]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6조 및 제7조)	230	—	—	—	—	230	46
특례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8조)	18	18	18	18	18	90	18
합 계	248	18	18	18	18	320	6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지수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수현	02-6788-4831	zisu37@nabo.go.kr